

## □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요

- (기능)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방향, 특구의 지정·변경·해제, 특구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등 심의·의결

\* 설치근거 :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77조

- (구성) 국무총리(위원장), 중기부 장관(간사), 당연직·위촉직 위원 등 38명
  - (당연직 위원) 기재·교육·과기·법무·행안·문체·농식품·산업·복지·환경·국토·해수·중기부 장관, 국조실장, 금융위·개보위 위원장, 식약처장 및 중소기업 ombudsman (18명)
  - (위촉직 위원) 분야별(신기술, 규제해소, 균형발전, 소비자보호 등) 전문가 (19명)

※ 특구위원회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해 특구위원회 개최 前, 심의위원회(위원장 : 중기부 장관) 구성·운영

## □ 특구위원회(16차) 개최 개요

- (일시 /방법) 2025.7.10(목) ~ 7.17(목) /서면

\* 재적위원 과반 출석,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(서면심의 : 재적위원 과반 찬성)

- (안전)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및 중요사항 변경 등 2건

\*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사전검토 완료(6.30)

| 구 분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안전 1호 | 【심의·의결】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|
| 안전 2호 | 【보 고】 既 지정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 |